

예 산 총 칙

제1조 :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255,472,651	7,664,180
1. 일반회계	246,352,531	7,390,576
2. 특별회계	9,120,120	273,604
의료보호기금	690,599	20,718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1,545,364	46,361
주차장	5,334,208	160,026
주거환경개선사업	168,027	5,041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622,381	18,671
기반시설사업	483,043	14,491
지하수관리	272,598	8,178
재정비축진	3,900	117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1,856,986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